

1. 개정이유

최근 바나나보트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견인하는 수상레저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종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할 때 이수해야 하는 ‘수상안전교육’과 면제교육(교육·실습 이수)을 통해 조종면허를 취득하는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교육’에 “견인 수상레저기구 안전조종” 교육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면허시험 면제교육에 ‘견인 수상레저기구 안전조종’ 내용 추가 (안 별표3)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제2급 조종면허 교육 내용에 “견인 수상레저기구 안전조종”을 추가

나. 수상안전교육에 ‘견인 수상레저기구 안전조종’ 내용 추가(안 별표5)
수상안전교육의 과목에 “견인 수상레저기구 안전조종”을 추가하고, 다른 과목의 교육시간을 조정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제 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급에 라목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견인 수상레저기구 안전조종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5]

수상안전교육의 과목 및 내용 등(제13조제1항 관련)

1. 수상안전교육의 과목·내용 및 교육시간

과목	내용	교육시간	
		신규 면허시험 응시	면허증의 갱신
가. 수상레저 안전 관계 법령	1)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선박 입항 및 출항 에 관한 법률」, 「해사안전법」, 「해양환경 관리법」 등 수상레저안전 관계 법령에 규정 된 안전 의무 및 금지 사항 2) 법령 위반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행정처분 등의 사례 등	30분	20분
나. 수상레저 기구의 사 용·관리	1) 수상레저기구의 구조 및 추진방식 2) 수상레저활동 전·후 점검사항 3) 소모성 부품의 교환 및 보관 요령 4) 자주 발생하는 고장 및 응급조치 방법 등	50분	40분
다. 수상상식	1) 해양 위험 기상 of 종류와 대처방법 2) 수상레저활동에 필요한 기초상식(휴대전화 충전상태 확인, 출항 전 기상상태 확인방법 등)	40분	20분
라. 수상구조	1) 구명조끼 등 구명장비의 착용 및 사용 방법 2) 생존요령 및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3) 위급상황 발생 시 사고 및 대처방법	40분	20분
마. 견인 수상 레저 기 구 안전조종	1) 견인 수상레저기구 조종자 및 이용객 주의사항 2) 견인 장비 사용 및 관리 방법 3) 표준 수신호 종류 및 활용 방법 4) 견인 수상레저기구별 주행 방법 5) 견인 중 익수자 구조 방법 등	20분	20분

2. 수상안전교육의 방법

가. 신규 면허시험 응시를 위한 수상안전교육: 집합교육

나. 면허증 갱신을 위한 수상안전교육: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교육. 이 경우 온라인교육으로 수상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수시험을 실시하며,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안전교육 이수자로 인정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